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이재관 · 황명선 · 윤준병  
박용갑 · 장철민 · 강준현  
문진석 · 복기왕 · 최민희  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(이하 “모태조합”이라 한다)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관리주체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하여는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. 현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으나,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하여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,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

가 직접 출자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모태조합의 결산서,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,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의2 신설 등).

##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 중 “제70조의2에”를 “제70조의3에”로 한다.

제70조의2를 제70조의3으로 하고, 제7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2(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)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1.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
2. 모태조합의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
3. 모태조합의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
4. 그 밖에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“투자조건부 용자”란 용자를 받는 법인이 용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「상법」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<u>제70조의2</u>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0조의3</u>에----- -----.</p> <p><u>제70조의2(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)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</u></p> <p><u>2. 모태조합의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</u></p> <p><u>3. 모태조합의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</u></p> <p><u>4. 그 밖에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

제70조의2 (생략)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~ ④

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0조의3 (현행 제70조의2와 같음)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~ ④

(현행과 같음)

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